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13호 2022. 12. 29.(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903호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904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11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37호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46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293호 정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제5차) 고시 - 50
- 사천시 고시 제2022-294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제3차) 고시 - 53
- 사천시 고시 제2022-297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 74
- 사천시 고시 제2022-298호 사천시 하천점용허가 고시 ----- 8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723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87
- 사천시 공고 제2022-1724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8
- 사천시 공고 제2022-1738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99
- 사천시 공고 제2022-1739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131
- 사천시 공고 제2022-174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32

회 람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조례 제1903호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을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유
통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 을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은 조 제2항 중 “건설 산업체” 를 “지역건설산업체” 로, “지역건설 산업” 을 “지역건설산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허가시” 를 “인·허가 시” 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촉진하도록” 을 “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로 한다.

제4조 중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을 “각종”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를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 를 “수립할 수 있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을 “실시할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 조사” 를 “실태조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인터넷” 을 “시” 로,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할” 을 “공개할”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을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산업체” 를 “건설사업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체” 를 “건설사업자” 로, “지역건설 근로자” 를 “지역건설근로자”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 을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을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 “건설업자” 를 “건설사업자” 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 를 “건설사업자” 로, “50퍼센트” 를 “70퍼센트”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역건설산업”으로, “제13조의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건설업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라.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로 하고 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조례 제1903호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 를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의2에 따라” 를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2조제1항제5호” 를 “법 제2조제1항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8항”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전략산업” 이란” 을 ““경상남도 전략산업” 이란” 으로, “따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른다” 를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따른 사업자등록일” 을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11. “사천시 전략산업” 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 등에 대한 지원)” 을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입기업” 을 “이전기업”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 지원)” 을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 시도” 를 “도외” 로, “전입하는” 을 “이전하는”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 를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로, “명예 도로명” 을 “명예도로명” 으로 한다.

제8조 중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해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 한다.

제10조 중 “전략산업” 을 “경상남도 전략산업” 으로, “경우” 를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이 조례 제3조” 를 “제3조” 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시가”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가”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임대산업단지” 를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사가” 를 “시장이”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투자유치활동” 을 “시장은 투자유치활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 을 “20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천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단서 중 “부지매입금을” 을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비 용자를” 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규칙 제81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에”를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로, “통보한”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말한다.

17. “지식서비스산업” 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후에” 를 “후 5년 이내에”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이전하는 설비가액” 을 “설비가액”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 을 “별표 2의2” 로,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을 “60점 이상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 를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 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를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와” 를 “시와” 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 을 “별표 2의2” 로,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을 “60점 이상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년” 을 “1년” 으로 한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다만,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사천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시와 부지 매매계약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3.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부지매입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계약일로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 인원이 모두 제1항제2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50점 이상이고 대상기업 적격평가(사업실적” 을 “50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로, “35점” 을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단,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제22조의2(중전의 제22조)의 제목 “(보조금 등의 지원)” 을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2.29.>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 및 제9조 관련)

구분	인정범위
<p>건설투자 비용</p>	<p>▶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p> <p>*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p> <p>(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p> <p>*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p> <p>*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p>
<p>기계장비 구입비용</p>	<p>▶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p> <p>*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p> <p>*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정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p> <p>*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p>
<p>근로환경개선시 설 투자비용</p>	<p>▶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 투자비용</p>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p> <p>*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p>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개정 2022.12.29.>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2조 및 제18조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2의2] <신설 2022.12.29.>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 및 제17조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증가율} \times 1)]}{3}$
- * 당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전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text{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차입금 의존도

평가척도	점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7.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9.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	5	5% < IRR ≤ 10%	2
15% < IRR ≤ 20%	4	IRR ≤ 5%	1
10% < IRR ≤ 15%	3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2.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2의3] <신설 2022.12.2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별표 3] <개정 2022.12.29.>

정산금액 산정기준(제11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관련)

구 분	산정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투자금액 미달률(고용인원 미달률)) *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전략산업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frac{\text{투자금액 미달률} + \text{고용인원 미달률}}{2})$ *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별표 3의2] <신설 2022.12.29.>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수	평 가 척 도	점수
15% 미만	10	25% 이상 ~ 30% 미만	4
15% 이상 ~ 20% 미만	8	30% 초과	2
20% 이상 ~ 25% 미만	6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인원이 경상남도 출생지를 둔 청년 신규고용인 경우 1명당 0.5점 추가 가점부여

- 청년 이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세~34세를 의미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3의3] <신설 2022.12.29.>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8조의2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 10%	10	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5	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0	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5	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30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4] <개정 2022.12.29.>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제19조 관련)

①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가척도		점수
일반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가척도	점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 · 연구개발업 · ICT기업 · 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융자금신청서 상 착공일부
 기산

9] 신규고용

신규고용	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용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	10

* 지원기준 초과 상시고용인원 1인당 0.5점 가점 부여

8]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
 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5] <개정 2022.12.29.>

보조금 환수 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7호) (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액 = 보조금 × (1 - 평균달성률)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div>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u>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u> (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12.29.>

사 업 (투 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법인(주인)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생산품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업 분석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div data-bbox="215 1122 828 1234"></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215 1301 828 1413"></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215 1480 828 1592"></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215 1659 828 1771"></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215 1839 828 1951"></div>	

□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m²)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 <input type="checkbox"/> C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small>*사업개시일</small>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사업성 전망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 관련 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사업장(소재지)	
○ 투자기간	~ (년)
○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 고용계획(명)	00 명
○ 보조금 지원규모	000 천원
- 00 보조금	000 천원
- 00 보조금	000 천원
○ 사후관리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20__년 __월 __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훈령 제437호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2.29.>

공간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제11조 관련)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 좌표(경도·위도)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 좌표(경도·위도·고도)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위성영상	공개제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 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93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제5차)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9-260호(2019.11.22.)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136호(2022.06.30.)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3,286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기반확충			2,093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116.64㎡,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199.82㎡	2,093	
지역경관개선			426	
	수청마을 숲 정비		49	
	예수마을 쉼터 조성		0	
	예수마을 들레길 조성	들레길 조성 420m	374	
	권역 안내관	1식	3	
지역역량강화			214	
	교육 및 견학	1식	39	
	홍보마케팅	1식	29	
	컨설팅	1식	18	
	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	1식	20	
	마을경영지원	1식	109	
부대비용		설계비, 감리비 등	553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변경 2015년 1월 1일 ~ 2023년 06월 30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3,981							
1)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사천시					센터
2	〃	〃	668-11	답	374	374	사천시					〃
3	〃	〃	668-12	답	121	121	사천시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
2) 수청마을 숲 정비					457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당초
							최*수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변경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예수마을 들레길 조성					1,085							
1	정동	예수	754	구	6,959	370	농림 축산 식품부					
2	〃	〃	180-3	답	1,573	327	사천시					
3	〃	〃	180-4	답	142	142	사천시					
4	〃	〃	181-6	대	443	57	사천시					
5	〃	〃	181-8	답	152	152	사천시					
6	〃	〃	180-9	도	37	37	사천시					

나. 물건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동면 대곡리	656-2	업무 및 창고시설	조립식	320㎡	사천시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시사 농어촌사업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94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제3차)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269호(2020.8.6.)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1-370(2021.12.16.)호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8,0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4. 주요 사업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변경)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행계획 (변경전)	시행계획 (변경후)	
합 계			8,000	8,000	
기초생활기반확충			4,359	3,989	
	사천활력어울림센터	농산물 판매장, 강의실, 다 어울림교육실 등	4,086	3,693	부지매입비 감소 물가상승 반영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주차장(38면), 조정식재 등	273	296	관급자제비 반영
지역경관개선			1,570	1,916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어린이정원 산책로장비 등	871	1,217	부지매입비 증가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정의1길, 읍내로 정비	699	699	사업물량 조정
지역역량강화			774	774	
	교육	주민·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227	227	
	홍보마케팅	McFood 페스티벌 개최 등	150	150	
	컨설팅	커뮤니티 경관디자인 등	231	231	
	정보화	스마트 두레공동체 앱 개발 등	23	23	
	마을경영지원	창업지원, 센터운영 지원, 회의비 등	143	143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관리비 등	1,297	1,321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변경 2017년 1월 1일 ~ 2023년 06월 30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가.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7,991	58,754	763							
1) 사천활력어울림센터 조성						1,845	1,452	△393							
1	사천	정의	401-13	401-13	대	264	264	-	최**외 7 사천시	사천읍 정의*길** 외				당초 변경	
2	〃	〃	401-14	401-14	대	91	91	-	사천시					매입	
3	〃	〃	401-15	401-15	대	258	-	△258	백**	사천읍 정의*길**				제외	
4	〃	〃	401-21	401-21	대	110	-	△110	김**	사천읍 정의*길**				제외	
5	〃	〃	401-32	401-32	대	25	-	△25	백**	사천읍 정의*길**				제외	
6	〃	〃	402-1	402-1	대	74	74	-	하** 사천시	정동면 쇠실*길**				당초 변경	
7	사천	정의	401-10	401-10	대	228	228	-	사천시						
8	〃	〃	401-11	401-11	대	105	105	-	사천시						
9	〃	〃	401-12	401-12	대	622	622	-	사천시						
10	〃	〃	401-34	401-34	대	6	6	-	사천시						
11	〃	〃	401-36	401-36	대	62	62	-	사천시						
2) 다목적두레장터 조성						1,288	1,288	-							
1	사천	정의	389-47	389-47	대	34	34	-	사천시						
2	〃	〃	389-6	389-6	대	139	139	-	사천시						
3	〃	〃	389-8	389-8	대	149	149	-	사천시						
4	〃	〃	396-1	396-1	대	93	93	-	기재부						
5	〃	〃	396-2	396-2	대	17	17	-	우** 외2 사천시	진주시 수곡면 원*길**				당초 변경	
6	〃	〃	396-28	396-28	대	165	165	-	기재부						
7	〃	〃	396-29	396-29	대	112	112	-	기재부						
8	〃	〃	396-30	396-30	대	5	5	-	기재부						
9	〃	〃	401-27	401-27	대	44	44	-	사천시						
10	〃	〃	401-33	401-33	대	70	70	-	사천시						
11	〃	〃	401-37	401-37	대	39	39	-	사천시						
12	〃	〃	401-38	401-38	대	4	4	-	사천시						
13	〃	〃	401-7	401-7	대	157	157	-	사천시						
14	〃	〃	401-8	401-8	대	73	73	-	사천시						
15	〃	〃	401-9	401-9	대	187	187	-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지역공동체놀이터(수양공원) 조성						47,881	49,037	1,156							
1	사천	정의	175	175	전	480	480	-	사천시						
2	〃	〃	177	177	전	635	635	-	사천시						
3	〃	〃	211	211	대	364	364	-	사천시						
4	〃	〃	213	213	공	146	146	-	사천시						
5	〃	〃	218	218	공	175	175	-	사천시						
6	〃	〃	167-10	167-10	도	609	609	-	사천시						
7	사천	정의	167-11	167-11	도	120	120	-	사천시						
8	〃	〃	167-4	167-4	도	85	85	-	사천시						
9	〃	〃	167-5	167-5	전	40	40	-	사천시						
10	〃	〃	174-1	174-1	전	601	601	-	사천시						
11	〃	〃	174-2	174-2	도	69	69	-	사천시						
12	〃	〃	178-1	178-1	전	1,053	1,053	-	사천시						
13	〃	〃	180-5	180-5	공	80	80	-	사천시						
14	〃	〃	210-1	210-1	공	1,117	1,117	-	사천시						
15	〃	〃	210-15	210-15	공	99	99	-	사천시						
16	〃	〃	210-18	210-18	공	123	123	-	사천시						
17	〃	〃	210-2	210-2	공	807	807	-	사천시						
18	〃	〃	210-20	210-20	공	27	27	-	사천시						
19	〃	〃	210-3	210-3	공	443	443	-	사천시						
20	〃	〃	210-4	210-4	공	776	776	-	사천시						
21	〃	〃	210-6	210-6	공	256	256	-	사천시						
22	〃	〃	210-9	210-9	공	63	63	-	사천시						
23	〃	〃	212-1	212-1	공	14,218	14,218	-	사천시						
24	〃	〃	214-1	214-1	공	147	147	-	사천시						
25	〃	〃	214-2	214-2	공	510	510	-	사천시						
26	〃	〃	214-3	214-3	공	65	65	-	사천시						
27	〃	〃	214-4	214-4	공	138	138	-	사천시						
28	〃	〃	219-1	219-1	공	154	154	-	사천시						
29	〃	〃	219-2	219-2	공	265	265	-	사천시						
30	〃	〃	219-3	219-3	공	246	246	-	사천시						
31	〃	〃	219-4	219-4	공	21	21	-	사천시						
32	〃	〃	219-5	219-5	공	37	37	-	사천시						
33	〃	〃	219-6	219-6	공	23	23	-	사천시						
34	〃	〃	219-7	219-7	공	34	34	-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사천	선인	501	501	공	685	685	-	사천시					
36	〃	〃	502	502	공	774	774	-	사천시					
37	〃	〃	503	503	공	645	645	-	사천시					
38	〃	〃	506	506	공	939	939	-	사천시					
39	〃	〃	581	581	대	419	419	-	사천시					
40	〃	〃	582	582	공	1,025	1,025	-	사천시					
41	〃	〃	583	583	공	737	737	-	사천시					
42	〃	〃	606	606	공	152	152	-	사천시					
43	〃	〃	579-1	579-1	공	678	678	-	사천시					
44	〃	〃	579-2	579-2	대	592	592	-	사천시					
45	〃	〃	579-5	579-5	사	3,108	3,108	-	사천시					
46	〃	〃	579-6	579-6	공	855	855	-	사천시					
47	〃	〃	579-7	579-7	대	188	188	-	사천시					
48	〃	〃	580-2	580-2	사	12,965	12,965	-	사천시					
49	〃	〃	581-1	581-1	대	93	93	-	사천시					
50	〃	〃	611-3	611-3	전	-	328	328	사천시					추가
51	〃	〃	612	612	전	-	592	592	사천시					추가
52	〃	〃	615-3	615-3	전	-	236	236	사천시					추가

4) Wing-Wing특화거리						6,977	6,977	-							
1	사천	수석	252-3	252-3	도	488	488	-	국토부						읍내 로
2	〃	〃	251-14	251-14	대	1	1	-	김**	진주시 망경동**					
3	〃	〃	251-15	251-15	대	9	9	-	허**	사천읍 수석리**	삼천포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4	〃	〃	253-10	253-10	도	136	136	-	사천시						
5	〃	〃	251-5	251-5	대	5	5	-	국토부						
6	〃	〃	251-2	251-2	도	298	298	-	사천시						
7	〃	〃	251-7	251-7	도	11	11	-	국토부						
8	〃	〃	761-35	761-35	도	91	91	-	국토부						
9	〃	〃	236-4	236-4	도	82	82	-	국토부						
10	〃	〃	234-2	234-2	도	28	28	-	사천시						
11	〃	〃	237-2	237-2	도	7	7	-	국토부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사천	수석	225-2	225-2	도	600	600	-	국토부					
13	〃	〃	761-16	761-16	도	1	1	-	국토부					
14	〃	〃	222-2	222-2	전	2	2	-	사천시					
15	〃	〃	233-1	233-1	도	460	460	-	사천시					
16	〃	〃	230-2	230-2	도	83	83	-	국					
17	〃	〃	230-7	230-7	도	15	15	-	국토부					
18	사천	정의	436	436	도	397	397	-	국토부					
19	〃	〃	431	431	대	1	1	-	신**					
20	〃	〃	436-1	436-1	도	2	2	-	기재부					
21	〃	〃	433	433	잡	7	7	-	사천시					
22	〃	〃	434	434	잡	4	4	-	천**					
23	〃	〃	435	435	잡	2	2	-	국토부					
24	〃	〃	435-1	435-1	대	2	2	-	영화**	사천읍 정의리**				
25	〃	〃	394-76	394-76	대	1	1	-	이** 외 2	사천읍 정의리** 외				
26	〃	〃	390-3	390-3	도	566	566	-	사천시					
27	〃	〃	393-4	393-4	도	221	221	-	국토부					
28	〃	〃	390-10	390-10	대	3	3	-	오**					
29	〃	〃	390-12	390-12	대	1	1	-	이**의 1	사천읍 평화동**	삼천포축산 업협동조합	근저당 권	1/2	
30	〃	〃	415-13	415-13	도	7	7	-	국토부					
31	〃	〃	416	416	구	8	8	-	농식품부					
32	〃	〃	360-2	360-2	도	128	128	-	사천시					
33	〃	〃	359-1	359-1	도	36	36	-	이**					
34	〃	〃	357-8	357-8	도	54	54	-	국토부					
35	〃	〃	334-2	334-2	도	206	206	-	국토부					
36	〃	〃	325-1	325-1	도	23	23	-	기재부					
37	〃	〃	336-5	336-5	도	165	165	-	사천시					
38	〃	〃	336-3	336-3	도	96	96	-	국토부					
39	〃	〃	321-1	321-1	도	69	69	-	사천시					
40	〃	〃	419	419	구	14	14	-	기재부					
41	〃	〃	418	418	도	8	8	-	국토부					
42	〃	〃	320-2	320-2	도	82	82	-	사천시		경남은행	근저당 권		
43	〃	〃	338-1	338-1	대	10	10	-	이** 실**	사천시 사천읍				당초 변경
44	사천	평화	201-7	201-7	도	85	85	-	국토부					
45	〃	〃	43-15	43-15	도	1	1	-	사천시					
46	〃	〃	43-6	43-6	도	3	3	-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7	사천	평화	43-1	43-1	대	3	3	-	이**	사천읍 평화리**				
48	〃	〃	43-2	43-2	도	14	14	-	사천시					
49	〃	〃	197-20	197-20	도	44	44	-	국토부					
50	〃	〃	247-5	247-5	도	415	415	-	사천시					
51	〃	〃	247-4	247-4	도	361	361	-	사천시					
52	〃	〃	247-6	247-6	도	10	10	-	국토부					
53	〃	〃	252	252	대	61	61	-	이**	부산광역시 황령대로**				
54	〃	〃	197-1	197-1	구	708	708	-	국토부					
55	사천	정의	389-3	389-3	도	694	694	-	국토부					장외길
56	〃	〃	390-3	390-3	도	1,158	1,158	-	사천시					
57	〃	〃	401-2	401-2	도	512	512	-	사천시					
58	〃	〃	404-2	404-2	도	453	453	-	사천시					
59	〃	〃	410-2	410-2	도	258	258	-	국토부					
60	〃	〃	415-15	415-15	도	1,887	1,887	-	국토부					

나. 물건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사천읍 정의리	401-13	근린생활시설	블럭조강판지붕 (12*7)	84	84	-	취**	사천읍 정의*길**				당초 변경
								사천시					
2	〃	〃	주택	블럭조스레트 (11*4)	44	44	-	〃	〃				
3	〃	〃	창고	블럭조스레트 (3*4)	12	12	-	〃	〃				
4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5*4)	20	20	-	〃	〃				
5	〃	〃	가추	철파이프조스레트 (11*1)	11	11	-	〃	〃				
6	〃	〃	수도		1	1	-	〃	〃				
7	〃	〃	영업보상	공간연출 시설이전비	1	1	-	〃	〃				
8	〃	〃	영업보상	도심원 시설이전비 등	1	1	-	이**	사천읍 정의*길**				당초 변경
								사천시					
9	〃	401-1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77.02	77.02	-	정**	사천읍 수양로**				당초 변경
								사천시					
10	〃	〃	수도		1	1	-	〃	〃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11	〃	〃	영업보상	막창&뒷고기	1	1	-	김** 사천시	사천읍 정의*길**					당초 변경
12	〃	〃	시설 이전비 등	주방시설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1	-	〃	〃					
13	〃	〃	간판	1*2, 2*4	2	2	-	〃	〃					
14	〃	401-15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	121.77	-	△121.77	백**	사천읍 정의*길**					제외
15	〃	〃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	56.65	-	△56.65	〃	〃					제외
16	〃	〃	대문1	철재(3*2) 적벽문주2	1	-	△1	〃	〃					제외
17	〃	〃	대문2	샷시조(1*2)	1	-	△1	〃	〃					제외
18	〃	〃	태양광 설비		1	-	△1	〃	〃					제외
19	〃	〃	수조	콘크리트조(1*3*1)	1	-	△1	〃	〃					제외
20	〃	〃	다용도실	판넬조판넬(7*2)	14	-	△14	〃	〃					제외
21	〃	〃	바닥	콘크리트(5*10*1/2)	25	-	△25	〃	〃					제외
22	〃	〃	가추	철파이프강판지붕 (1.5*2)	3	-	△3	〃	〃					제외
23	〃	〃	화단1	블럭조(5*1)	1	-	△1	〃	〃					제외
24	〃	〃	화단2	2*8	1	-	△1	〃	〃					제외
25	〃	〃	수도		1	-	△1	〃	〃					제외
26	〃	〃	은목서	R20	2	-	△2	〃	〃					제외
27	사천읍 정의리	401-15	동백나무	R10	1	-	△1	백**	사천읍 정의*길**					제외
28	〃	〃	동백나무	R7	2	-	△2	〃	〃					제외
29	〃	〃	나무수국	R7	1	-	△1	〃	〃					제외
30	〃	〃	자목련	R7	2	-	△2	〃	〃					제외
31	〃	〃	사철나무	R20	1	-	△1	〃	〃					제외
32	〃	〃	사철나무	R5	1	-	△1	〃	〃					제외
33	〃	〃	철쭉	H1.5, W1.5	9	-	△9	〃	〃					제외
34	〃	〃	수국		1	-	△1	〃	〃					제외
35	〃	〃	꽃치자 나무	H1.5	1	-	△1	〃	〃					제외
36	〃	〃	목단		1	-	△1	〃	〃					제외
41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8	-	△8	〃	〃					제외
42	〃	〃	계단	콘크리트	1	-	△1	〃	〃					제외
43	〃	〃	수도		1	-	△1	〃	〃					제외
44	〃	〃	대문	철재 슬라브	1	-	△1	〃	〃					제외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45	〃	402-1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30.24	30.24	-	하** 사천시	정동면 쇠실*길**					당초 변경
46	〃	〃	주택	블럭조스라브(5*4)	20	20	-	〃	〃					
47	〃	〃	보일러실	블럭조스레트(1.5*2)	3	3	-	〃	〃					
48	〃	〃	화장실	블럭조스라브(1*1)	1	1	-	〃	〃					
49	〃	〃	물탱크	FRP및콘크리트	1	1	-	〃	〃					
50	〃	〃	가추	스레트(5*2)	10	10	-	〃	〃					
51	〃	〃	계단	콘크리트(5*1)	1	1	-	〃	〃					
52	〃	〃	대문	샷시조(3*2)	1	1	-	〃	〃					
53	〃	〃	수도		1	1	-	〃	〃					
54	〃	〃	바닥	콘크리트(5*5)	25	25	-	〃	〃					
55	〃	〃	영업보상	현대장식	1	1	-	〃	〃					
56	〃	〃	시설 이전비 등	재고자산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1	-	〃	〃					
57	〃	〃	간판	1*2	2	2	-	〃	〃					
58	사천읍 정의리	401-12	점포1	블럭조스레트 및 강판지붕(5*5)	25	25	-	강** 사천시	사천읍 정의*길**					당초 변경
59	〃	〃	점포2	블럭조강판지붕(6*3)	18	18	-	〃	〃					
60	〃	〃	영업보상	한성상회	1	1	-	〃	〃					
61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1	-	〃	〃					
62	〃	〃	전기시설	8KW	1	1	-	〃	〃					
63	〃	〃	사무실	판넬조(1*2)	2	2	-	〃	〃					
64	〃	〃	가추	철판이프조 강판지붕(6*4)	24	24	-	〃	〃					
65	〃	〃	간판	5*1	1	1	-	〃	〃					
66	〃	〃	점포3	블럭조강판지붕(4*4)	16	16	-	차** 사천시	사천읍 정의*길**					당초 변경
67	〃	〃	점포4	블럭조스레트(3*7)	21	21	-	〃	〃					
68	〃	〃	점포5	블럭조스레트(3*6)	18	18	-	〃	〃					
69	〃	〃	영업보상	성민상회	1	1	-	〃	〃					
70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1	-	〃	〃					
71	〃	〃	가추1	강판지붕 (15*(5+3)*1/2)	60	60	-	〃	〃					
72	〃	〃	가추2	천막(접이식) (7*1)	7	7	-	〃	〃					
73	〃	〃	냉동고	판넬조(6*2)	12	12	-	〃	〃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74	〃	〃	전기시설1	7KW	1	1	-	〃	〃				
75	〃	〃	전기시설2	4KW	1	1	-	〃	〃				
76	〃	〃	간판	5*1	1	1	-	〃	〃				
77	사천읍 선인리	612	비닐하우스	철재비닐6*10 스프링클러포함	-	60	60	이**	사천읍 정의*길**				당초
								사천시					변경
78	〃	〃	매실나무	R20	-	5	5	〃	〃				
79	〃	〃	모과나무	R10	-	1	1	〃	〃				
80	〃	〃	대추나무	R10	-	1	1	〃	〃				
81	〃	〃	사과나무	R10	-	1	1	〃	〃				
82	〃	〃	사과나무	R3	-	1	1	〃	〃				
83	〃	〃	무화과나무		-	1	1	〃	〃				
84	〃	〃	수목미상	R5	-	1	1	〃	〃				
85	〃	615-3	웬스	Hh1.5	-	20	20	〃	〃				
86	〃	〃	계사	목조0.8*2	-	1	1	〃	〃				
87	〃	〃	수도시설	-	-	1	1	〃	〃				
88	〃	〃	감나무	R10	-	1	1	〃	〃				
89	〃	〃	사철울타리	2*3	-	1	1	〃	〃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8. 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법령 의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 주차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주차장	사천읍 수석리 401-10번지 일원	1,165	감) 1,165	-	사천시 고시 제2004-25호 (2004.06.17.)	

■ 주차장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주차장 폐지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1-10번지 일원에 사천 활력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코자 함

(2) 공간시설

①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수양공원	근린공원	사천읍 정의리 일원	75,511	-	75,511	1966.10.18 건설부고시 제2882호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수양공원	조성계획 변경	○ 수양공원 내 공원시설의 조성현황을 반영하고 조성된 세부시설의 결정을 변경코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②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조성계획총괄표

시설의 구분	시설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면 적	75,511	75,511	100	100	288.90	288.90	429.72	429.72	-
시 설 면 적	19,684	21,236	26.1	28.1	288.90	288.90	429.72	429.72	증1,552
도 로 및 광 장	6,271	6,961	8.3	9.2	-	-	-	-	증690
조 경 시 설	3,754	3,648	5.0	4.9	-	-	-	-	감106
휴 양 시 설	1,424	1,446	1.9	1.9	-	-	-	-	증22
유 희 시 설	-	976	-	1.3	-	-	-	-	증976
운 동 시 설	1,208	1,076	1.6	1.4	-	-	-	-	감132
교 양 시 설	4,543	4,619	6.0	6.1	165.94	165.94	366.76	366.76	증76
편 의 시 설	879	905	1.2	1.2	62.96	62.96	62.96	62.96	증26
공 원 관 리 시 설	1,605	1,605	2.1	2.1	-	-	-	-	-
녹 지 및 기 타	55,827	54,275	73.9	71.9	-	-	-	-	감1,552

■ 시설조서

1) 시설별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및 광장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로및광장		6,271	6,961	-	-	-	-	증690
도로		5,777	6,495	-	-	-	-	증718
1) 광장	선인리 583	494	466	-	-	-	-	감28

나) 조경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경시설		3,754	3,648	-	-	-	-	감106
2) 잔디광장	정의리212-2	1,608	1,608	-	-	-	-	-
3) 분수대	선인리582	319	323	-	-	-	-	증4
4) 연못1	선인리579-1	660	637	-	-	-	-	감23
5) 연못2	선인리579-6	746	634	-	-	-	-	감112
6) 화훼원	선인리503	421	446	-	-	-	-	증25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다) 휴양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1,424	1,446	-	-	-	-	증22	
7	전망쉼터	정의리212-1	361	369	-	-	-	-	증8
8	휴게쉼터1	정의리150	949	955	-	-	-	-	증6
9	휴게쉼터2	선인리580-2	114	122	-	-	-	-	증8

라) 유희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희시설		-	976	-	-	-	-	증976	
22	어린이놀이터	정의리150	-	976	-	-	-	-	증976 신설

마) 운동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1,208	1,076	-	-	-	-	감132	
10	게이트볼장	선인리579-2	1,208	1,076	-	-	-	-	감132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바) 교양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교양시설		4,543	4,619	165.94	165.94	366.76	366.76	증76	
11	침오정	선인리581-1	1,411	1,480	66.94	66.94	267.76	267.76	증69
12	수양루	선인리580-2	326	326	54	54	54	54	-
13	야외무대	선인리580-2	422	422	-	-	-	-	-
14	생태학습장	선인리503	2,339	2,346	-	-	-	-	증7
15	사적비	선인리580-2	45	45	45	45	45	45	-

사) 편익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시설		879	905	62.96	62.96	62.96	62.96	증26	
16	주차장	선인리614-1	710	710	-	-	-	-	-
17	화장실1	선인리580-2	130	156	36.96	36.96	36.96	36.96	증26
18	화장실2	정의리212-1	39	39	26	26	26	26	-

아) 공원관리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관리시설		1,605	1,605	-	-	-	-	-	
19	배수지	정의리148-2	1,605	1,605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자) 녹지 및 기타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및 기타		55,827	54,275	-	-	-	-	감1,552
20	유보지	선인리172	1,210	1,210	-	-	-	-
21-1	녹지1	정의리175	20,324	20,389	-	-	-	증65
21-2	녹지2	선인리583	4,946	4,946	-	-	-	-
21-3	녹지3	정의리212-1	3,824	3,785	-	-	-	감39
21-4	녹지4	선인리506	3,437	3,459	-	-	-	증22
21-5	녹지5	선인리212-1	6,033	2,446	-	-	-	감3,587
21-6	녹지6	선인리212-1	2,924	2,924	-	-	-	-
21-7	녹지7	선인리212-1	1,284	1,284	-	-	-	-
21-8	녹지8	선인리212-1	1,622	1,622	-	-	-	-
21-9	녹지9	선인리212-1	1,685	1,757	-	-	-	증72
21-10	녹지10	선인리580-2	3,007	3,140	-	-	-	증133
21-11	녹지11	선인리579-5	4,283	3,502	-	-	-	감781
21-12	녹지12	선인리580-2	444	538	-	-	-	증94
21-13	녹지13	선인리580-2	804	924	-	-	-	증120
21-14	녹지14	정의리214-2	-	2,349	-	-	-	증2,349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2)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계			1,582	5,777				
변경		소계			1,927	6,495				
기정	소로	3	1	4	306	1,506	산책로	구역계	광장	-
변경	소로	3	1	5	460	2,248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2	3	113	652	산책로	구역계	광장	-
변경	소로	3	2	4	163	681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3	4	68	276	산책로	주차장	광장	-
기정	소로	3	4	5	201	1,114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
변경	소로	3	4	4	260	1,040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
기정	소로	3	5	5	116	595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6	3	86	253	산책로	소로3-2	화훼원	-
변경	소로	3	6	2.5	144	361	산책로	소로3-2	소로3-4	-
기정	소로	3	7	4	56	224	산책로	구역계	잔디광장	-
변경	소로	3	7	4	58	23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기정	소로	3	8	3	82	249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
변경	소로	3	8	2	83	175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
기정	소로	3	9	2	108	215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쉼터	-
기정	소로	3	10	2	50	109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변경	소로	3	10	2	56	11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기정	소로	3	11	1.5	33	78	산책로	소로3-6	소로3-2	-
변경	소로	3	11	1.1	33	37	산책로	소로3-6	소로3-2	-
기정	소로	3	12	1.2	116	151	산책로	소로3-7	소로3-9	-
기정	소로	3	13	1.2	80	104	산책로	소로3-7	소로3-12	-
기정	소로	3	14	1.5	167	251	산책로	소로3-12	전망쉼터	-
변경	소로	3	15	1.1	15	17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6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읍내로) 실시계획인가

① 사업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2-3번지 ~ 정의리 320-2번지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수립
특화거리(읍내로) 조성

③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4,866㎡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사천시장

-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 : 준공일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사천읍 수석리	252-3	도	3,692	488	국토교통부				
2	사천읍 수석리	251-14	대	60	1	김**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			
3	사천읍 수석리	251-15	대	796	9	허**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사천 삼천포 축산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근저당권
4	사천읍 수석리	253-10	도	149	136	사천시				
5	사천읍 수석리	251-5	대	10	5	국토교통부				
6	사천읍 수석리	251-2	도	298	298	사천시				
7	사천읍 수석리	251-7	도	11	11	국토교통부				
8	사천읍 수석리	761-35	도	8,309	91	국토교통부				
9	사천읍 수석리	236-4	도	82	82	국토교통부				
10	사천읍 수석리	234-2	도	45	28	사천시				
11	사천읍 수석리	237-2	도	7	7	국토교통부				
12	사천읍 수석리	225-2	도	665	600	국토교통부				
13	사천읍 수석리	761-16	도	26	1	국토교통부				
14	사천읍 수석리	222-2	전	9	2	사천시				
15	사천읍 수석리	233-1	도	814	460	사천시				
16	사천읍 수석리	230-2	도	88	83	국				
17	사천읍 수석리	230-7	도	26	15	국토교통부				
18	사천읍 정의리	436	도	399	397	국토교통부				
19	사천읍 정의리	431	대	73	1	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20	사천읍 정의리	436-1	도	40	2	기획재정부				
21	사천읍 정의리	433	잡	56	7	사천시				
22	사천읍 정의리	434	잡	10	4	천**외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 신진아파트가동 ***호			
23	사천읍 정의리	435	잡	2	2	국토교통부				
24	사천읍 정의리	435-1	대	3	2	**홍업 주식회사	진주시 상봉동 ***			
25	사천읍 정의리	394-76	대	92	1	이**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이**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동 ****호 모종동,환리동백야파트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 ***호한빛타운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26	사천읍 정의리	390-3	도	1,158	566	사천시				
27	사천읍 정의리	393-4	도	225	221	국토교통부				
28	사천읍 정의리	390-10	대	86	3	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29	사천읍 정의리	390-12	대	69	1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남한맨션가-***	사천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도 ****-*	근저당권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남한맨션 나-***			
30	사천읍 정의리	415-13	도	221	7	국토교통부				
31	사천읍 정의리	416	구	664	8	농림축산식 품부				
32	사천읍 정의리	360-2	도	129	128	사천시				
33	사천읍 정의리	359-1	도	36	36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34	사천읍 정의리	357-8	도	56	54	국토교통부				
35	사천읍 정의리	334-2	도	212	206	국토교통부				
36	사천읍 정의리	325-1	도	23	23	기획재정부				
37	사천읍 정의리	336-5	도	165	165	사천시				
38	사천읍 정의리	336-3	도	96	96	국토교통부				
39	사천읍 정의리	321-1	도	69	69	사천시				
40	사천읍 정의리	419	구	161	14	기획재정부				
41	사천읍 정의리	418	도	65	8	국토교통부				
42	사천읍 정의리	320-2	도	110	82	사천시				
43	사천읍 정의리	338-1	대	10	10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우성캐릭터****-****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3.15 대로 *** 석전동, 사천지점	근저당권
44	사천읍 평화리	201-7	도	85	85	국토교통부				
45	사천읍 평화리	43-15	도	1	1	사천시				
46	사천읍 평화리	43-6	도	3	3	사천시				
47	사천읍 평화리	43-1	대	3	3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			
48	사천읍 평화리	43-2	도	14	14	사천시				
49	사천읍 평화리	197-20	도	44	43	국토교통부				
50	사천읍 평화리	247-5	도	415	169	사천시				
51	사천읍 평화리	247-4	도	361	99	사천시				
52	사천읍 평화리	247-6	도	10	10	국토교통부				
53	사천읍 평화리	252	대	61	6	이**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번길**, ***동****호(대연동, 대연경동메르빌아파트)			
54	사천읍 평화리	197-1	구	708	3	국토교통부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2)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① 사업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1-9번지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수립
다목적두레장터 조성

③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1,245㎡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사천시장
-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 : 준공일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사천읍 정의리	389-6	대	139	139	사천시				
2	사천읍 정의리	389-8	대	149	149	사천시				
3	사천읍 정의리	389-47	대	34	34	사천시				
4	사천읍 정의리	396-1	대	93	93	기획재정부				
5	사천읍 정의리	396-2	대	17	6	사천시				
6	사천읍 정의리	396-28	대	165	165	기획재정부				
7	사천읍 정의리	396-29	대	112	112	기획재정부				
8	사천읍 정의리	396-30	대	5	5	기획재정부				
9	사천읍 정의리	401-7	대	157	157	사천시				
10	사천읍 정의리	401-8	대	73	43	사천시				
11	사천읍 정의리	401-9	대	187	187	사천시				
12	사천읍 정의리	401-27	대	44	44	사천시				
13	사천읍 정의리	401-33	대	70	70	사천시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97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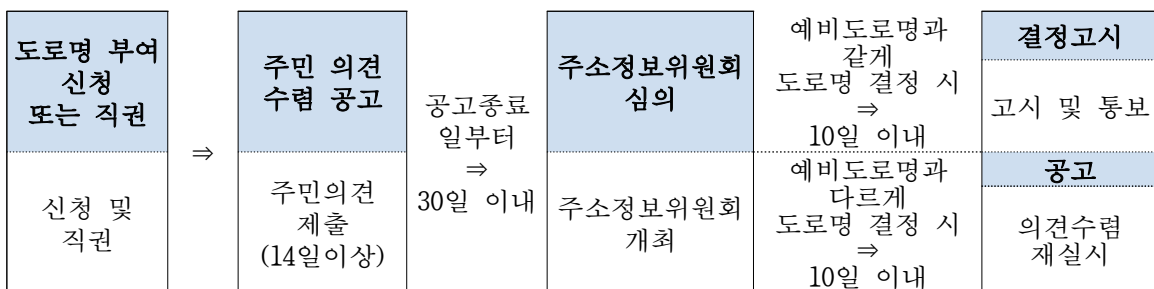
2022. 12. 29.

사 천 시 장

1. 고 시 일 : 2022. 12. 29.
2. 고시방법 : 관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15건(종속구간포함), 종속구간변경 1건

※별첨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조서 및 위치도 1부.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장전 산업길	사천읍 장전리 666-2	사천읍 장전리 996	도면 참조	1200	15	길	20	1/120	장전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부지	사천읍
2	장전 산업길 (종속구간)	사천읍 장전리 992	사천읍 장전리 1005	도면 참조	180	15	길	20	80-1/8 0-18	장전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부지	사천읍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 구역
		시작 지점	끝지점								
3	평화1길 (중속)	사천읍 평화리 163-45	사천읍 평화리 145-19	도면 참조	127	8	길	10	24-1/ 24-26	평화1길 중속구간	사천읍
4	평화2길 (중속)	사천읍 평화리 126-1	사천읍 평화리 140-7	도면 참조	100	8	길	10	70-1/ 70-20	평화2길 중속구간	사천읍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5	샘골2길	사천읍 선인리 452-1	사천읍 선인리 465	도면 참조	222	8	길	20	1/24-26	샘골길 일련번호 부여	사천읍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6	무산4길	사천읍 수석리 68-2	사천읍 수석리 26-1	도면 참조	338	10	길	20	1/34	무산길 일련번호 부여	사천읍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7	제민3길	곤양면 대진리 1191-32	곤양면 대진리 1191-22	도면 참조	470	6	길	20	1/48	제민길에서 일련번호 부여	곤양면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8	외구1길	서포면 외구리 1496-7	서포면 외구리 1496-31	도면 참조	420	6	길	20	1/42	서포면 외구리내 택지지구	서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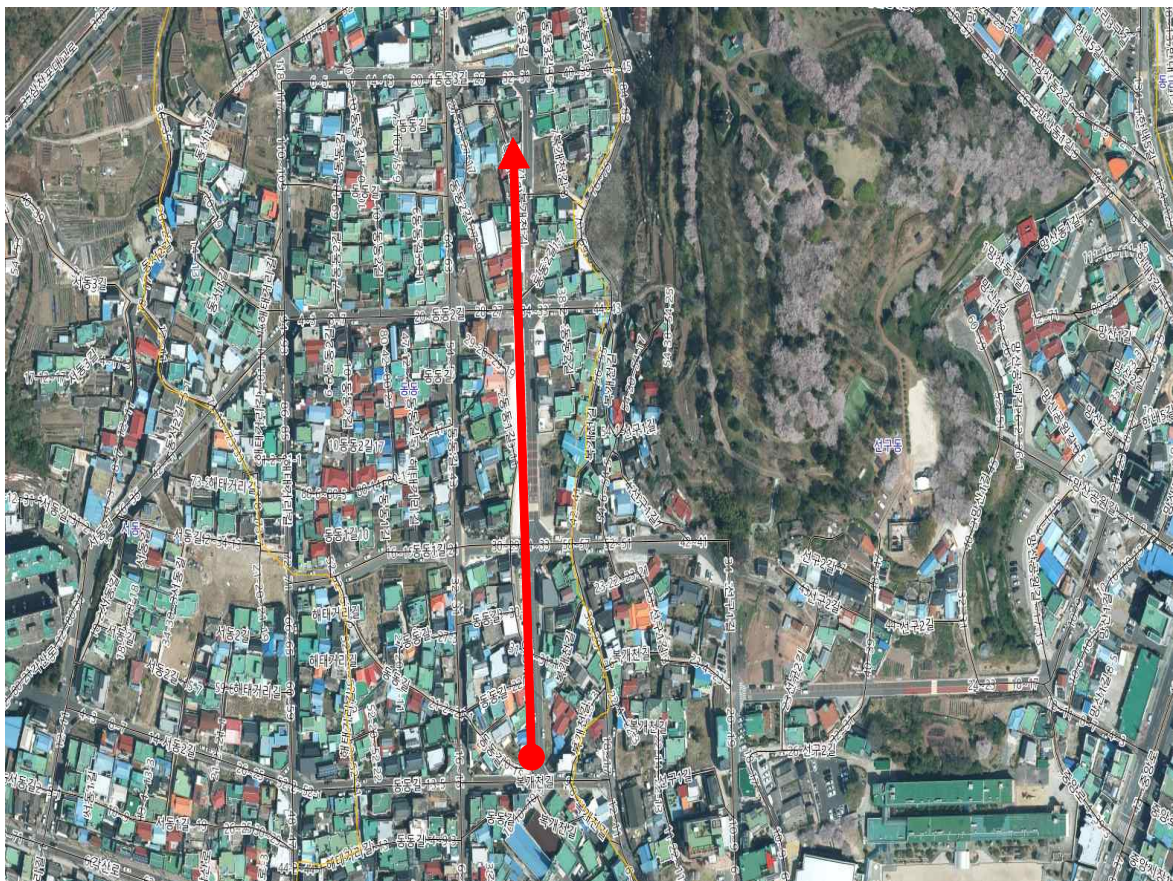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9	동동4길	동동 56	동동 9-15	도면 참조	325	8	길	10	1/66	동동길 일련번호 부여	동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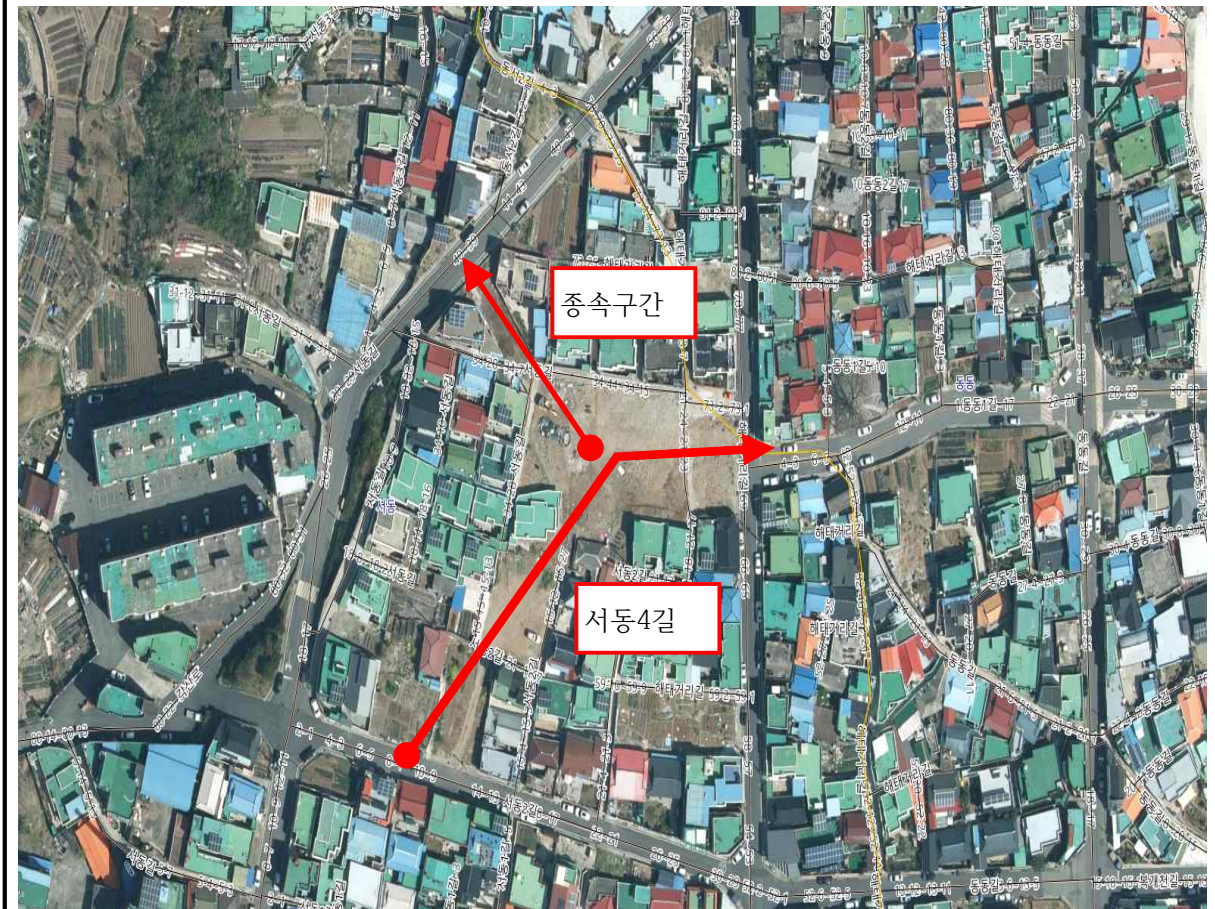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0	서동4길	서동 131-7	서동 106-16	도면 참조	124	8	길	10	1/26	서동길 일련번호 부여	동서동
11	서동4길(종속)	서동 102-5	서동 97-12	도면 참조	50	8	길	10	10-1/10-10	서동4길 종속구간	동서동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2	동서3길	서동 176-48	동동 344-10	도면 참조	404	8	길	20	1/42	동서길 일련번호 부여	동서동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3	상강청1길	용강동 520-15	용강동 783-1	도면 참조	114	8	길	20	1/12	상강청길 일련번호 부여	별용동
14	상강청2길	용강동 498-1	용강동 106-9	도면 참조	185	10	길	20	1/20	상강청길 일련번호 부여	별용동
15	상강청3길	용강동 784-4	용강동 515-7	도면 참조	100	8	길	20	1/10	상강청길 일련번호 부여	별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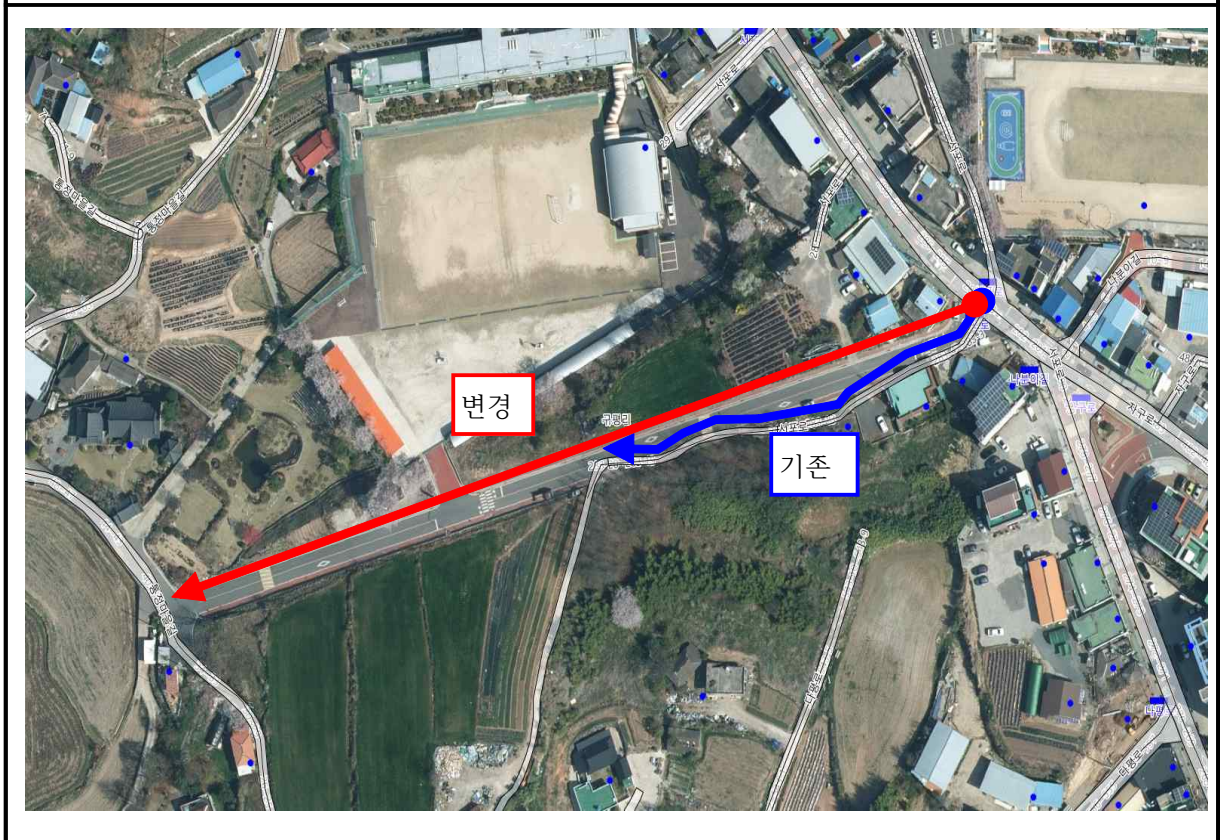
부여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변경 전	서포로 (중속구간)	서포면 구평리 1343	서포면 구평리 906-1	도면 참조	148	8	길	10	283-1 /283-22		서포면
변경 후			서포면 구평리 914-3	도면 참조	277	10	길	10	283-1 /283-56	서포로 중속구간 연장 (도시계획도로 구간)	서포면

부여도면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주)지구산업개발 정원관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서랑로 214번길 24(지곶동)
하천명		곤양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752-114, 752-129번지		
	면 적	60㎡		
	기 간	허가일로부터 3일		
	목적 및 개요	지질조사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23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김정영		
	대표자 (성 명)	김정영	주소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 미진스위트빌 14동 802호
소하천명		신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761-5번지 일원		
	면적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허가일(2022. 12. 29.)로부터 5년간		
	목적 및 사유	건축물 건립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24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당이주단지 대지조성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리 <정의리, 구암리>가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정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비고(위치)
	읍면동	법정리	읍면동	법정리			
1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정의리	4	14,139	사천게이트볼장 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2.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용당이주단지 대지조성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리 <정의리, 구암리>가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법정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비고(위치)
	읍면동	법정리	읍면동	법정리			
1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정의리	4	14,139	사천게이트볼장 위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토지관리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 ~ 2023. 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 구암리에서 정의리로 편입된 지번(1395, 1401, 1401-1, 1405) 제외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중 천 리	중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홍 사 리	홍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향 리	중향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립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량 리		구량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별 용 동		별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38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외 1건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나.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체험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 다.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 라. 시설사용 허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60, FAX: 831-2969)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용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미반영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9. ~ 2023. 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1) 사천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 2)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액 반영
- 3)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4조(업무)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시민이 행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시민의 균등한 독서 기회 제공을 위한 발생 비용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행정운영경비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소계(a)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세입	자체수입		897,000	1,972,000	1,995,000	2,019,000	2,043,000	8,926,000
	의존재원		7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98,000
	소계(b)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다. 부대의견: 2023년 8월 준공 후 시립도서관 시범운영 및 2023년 12월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예산 반영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의 존 재 원	소 계	7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98,000
	보조금 (국도비)	7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98,000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897,000	1,972,000	1,995,000	2,019,000	2,043,000	8,926,000
	지방세	897,000	1,967,000	1,990,000	2,014,000	2,038,000	8,906,000
	세외수입		5,000	5,000	5,000	5,000	2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조금(국도비) 지원 및 자체 수입을 통한 재원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립도서관: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52-2
2.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30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등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4.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시설사용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복사 또는 인쇄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기증자료 관리)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호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사천시의회 의원
3. 다른 공립도서관 관장 및 사서 직원
4.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평일)	요 금	비 고
기본 시설	전 시 실	1일 전시	20,000원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대 강 당	3시간 이내	40,000원	▶기본시간: 3시간
	다목적실	3시간 이내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가산
	강 의 실	3시간 이내	20,000원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부대 시설	냉 난 방 시 설	전시실	1일 이용	20,000원
		대강당	1회 이용	20,000원
		그외	1회 이용	10,000원

※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별표 2]

이용료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규 격	요 금	비 고
흑백	복사	A4용지(1매)	50원	
		A3용지(1매)	60원	
	인쇄	A4용지(1매)	60원	
		A3용지(1매)	100원	
칼라	복사 및 인쇄	A4용지(1매)	300원	
		A3용지(1매)	400원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다. 회원가입 및 회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시설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미반영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9. ~ 2023. 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 증가와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신청 자격, 운영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이음회원(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으로 구분하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시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⑤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도서관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회원은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도서관에 신고해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⑤ 회원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도서관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도서관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5.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무단반출 시킨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회원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의 회원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9조(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회원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증은 본인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④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활한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 간행물 및 신문자료(다만, 정기 간행물 과월호는 대출 가능)
4. 한정판으로써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중지)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 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중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반납)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까지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시지, 전화, 우편,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복사 제한) 도서관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4조(시설사용 신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서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시설사용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대강당, 다목적실, 강의실
2. 부대시설: 기본시설의 냉·난방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제16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증 도서 대장에 등재한다.

③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14세 미만)	청소년 (14세 이상)	일반	
		사천시민	사천시민 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주 소	(주민등록지)	연 락 처 (1)			
	(실거주지)	연 락 처 (2)			
학 교 명		직 장			
직 장 명		연 락 처			

- ※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2)는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자료를 대출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자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수집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여부 확인 및 추후 법정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은 법정대리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필수)동의 항목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가. 도서관 시설·서비스 및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회원카드의 재발급 및 교체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천시 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그 밖에 통계처리,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공된 통계 자료의 형태로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 다. 개별 수집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ID, 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정보
 - 목적
 - 가. 도서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 나. 안내 및 고지(연체, 예약도서, 희망도서, 문화강좌, 행사정보 안내 및 SMS발송)
 - 다. 분실 및 훼손자료 변상 시 본인 확인(세외수입처리 등)
 - 라. 도서 장기연체 시 우편물 발송
 - 마.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추천, 시상, 현황조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탈퇴 시까지이며, 회원등록 후 2년 동안 도서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 회원탈퇴 처리됩니다. 다만, 회원 정보 삭제 공고 기간 내 재동의 시 회원자격은 2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필수동의 항목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 선택동의 항목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항목: 학교명, 직장명, 직장연락처
- 목적: 안내 및 고지(연체, 예약도서, 희망도서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성명(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연락처 :)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변경 신청내용 (변경 시 기재)	변경사항	○변경건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사용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사용기간						
반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기증 도서 대장

구분 일자	도서명	출판사	기증인(처)			결재		
			성명	성별	연락처	담당	팀장	관장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39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정현옥		
	대표자 (성명)	정현옥	주소	서포면 다평리 726-9
소하천명		금산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088번지 일원		
	면적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허가일(2022. 12. 29.)로부터 5년간		
	목적 및 사유	건축물 건립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81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4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12. 29.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12. 29. ~ 2023. 1. 13.(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35다7309	E220 d 4Matic	강*경	2022. 12. 22.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차주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운행정지 신청
300너1910	재규어 F-PACE 20d AWD	노*비	2022. 12. 22.	차주 명의로 대출 후 상환을 하겠다고 하여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이후 차량을 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운행정지 신청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